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 6.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 6. 3.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3. 6. 7.
다. 상정일자 :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13. 6. 25)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9.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7. 9) 개정으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2012. 9.28)됨에 따라 시 조례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광고물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법 제3조제7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지정함.
(안 제6조)
- 2) 법 제4조의2 및 영 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3) 법 제26조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4)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 운영절차를 정하고 주민협의회의 구성 · 운영은 안 제8조를 적용함. (안 제9조)
- 5)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경우 추진 절차 및 고시내용을 정함. (안 제11조)

다.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우리 구 조례의 제 · 개정 및 폐지 · 변경 주요내용

가. 주요 조례 폐지 내용을 보면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의 허가신청 및 신고수리는 게시시설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 제4조(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 삭제
- 2) 상위법 근거규정이 있는
(가)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

- 제28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 삭제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처리
 - 제35조(과태료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징수절차 삭제
=> 안 제23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내용만 규정함

3) 구청장 권한사항에서 시장 권한사항으로 위임되어 서울시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삭제함

- ①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조례(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표시방법의 완화) : 삭제
- ② 제24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 삭제
- ③ 제33조의2(광고물 설명제) : 삭제

나. 주요 조례 변경내용

- 1)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구 조례에서 정함
 - 안 제4조 1호~3호 : 변경사항(타사광고,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
등)은 허가사항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사항은 신고대상으로
변경
- 2)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구 조례에서 정함
 - 안 제5조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연장허가로 함.
(옥외광고물 등 시행령 제10조 규정)
- 3) 안전행정부 조례개정 표준안(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름
 - 안 제14조~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그
기준,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업무절차 및 검사 요령 등)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인원을 구체화 정리

다. 주요 조례 신설내용

1)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① 안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 신설

영 제2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용도지정과 간판표시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설치위치, 수량, 종류, 규격 등 배치계획)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② 안 제7조(자율관리 협정),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안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 신설

경관법 제16조(경관협정의 체결)규정에 따라 간판에 대한 경관 사업 추진의 근거 조항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자율관리협정 및 주민협의회,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③ 안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 신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 및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외국어 병기 지역을 지정토록 함

④ 안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절차 등) 제6항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 : 신설

2)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위임함

- 안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 신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게시대 특성과 유형이 달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힘듬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함

3) 부패영향평가결과(감사담당관)에 따른 위원의 해촉규정 마련

- 안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신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 기준 준수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불필요한 대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광고물을 구체화함으로써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광고물별 표시방법을 유지도록 구체화 함.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따라 인상

- 1) 안 제1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불필요한 대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광고물을 구체화하고,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일부인상
- 2) 안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불법광고물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일부인상(안행부 표준안)
※ 안 제23조(수수료) : 현행대로 유지함(대부분 일반 생활형 광고물임)

○ 옥외광고물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전도 검사기관으로 선정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안전도 검사장비와 인력 등 충분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 안전도 검사기관 기준에 적합할 때 검사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2)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는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시공에 필요한 필수 검수 과정으로 간판의 수준 향상과 동시에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겠지만, 광고물 소유자 측에서 검사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되면, 검사비용 절감을 위해 자칫 검사비가 저렴한 형식적인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히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실제 검사수수료는 예산편성 초기부터 물가정보 및 물가상승률 등 충분한 사전 조사 후 적정한 광고물 등 검사 안전도 검사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3) 특히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시에는 명확한 기준과 사전예고 등으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2013. 3. 21.~4. 10.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옥외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실화하고 기존 자치구 조례보다 대폭 상향하여 불법 광고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문으로 시달 한 바, 우리 구에서도 개정 조례안을 2013.4.18. 제5차 마포구 조례 규칙 · 심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비교하여 우리 구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수수료는 물가안정에 영향이 없도록 현행대로 유지하고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액은 불법 대형 광고물 제재를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 한도에서 평균 6% 정도 일부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고물 등 특성상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물가에는 크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 기준을 준수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수료 납부는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현실에 맞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고, 특히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기관 및 기준절차 등 안전도 검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저가의 형식적인 안전도 검사로 주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